


#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안내

## 1. 공통사항 안내


**Ⅰ. 2020년도 주요 달라진 점 ····· 4**
1. 예술지원체계 재편 4
2. 다년사업 신설 6
3. 집행기준 범위 확대 6
4. 지원사업 '교부~집행~정산' 시스템 변화 6
5.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6

**Ⅱ.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7**
1.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7
2. 2020년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2차 공모 개요 8

**Ⅲ. 공모사업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9**
1. 공모 및 사업기간 9
2.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9

**Ⅳ. 지원신청자격·부적격자·부적격사업·지원신청 예산편성 안내 ·· 10**
1. 지원신청 자격 10
2. 지원신청 부적격자 10
3.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11
4. 지원신청 예산편성 안내 12
5. 심의배제사항 13

**Ⅴ. 지원시스템 사용안내 ····· 14**
1. 지원신청방법 14
2. 시스템 사용시 유의사항 14


## 2. 기초예술창작 활성화


**Ⅰ.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 16**

**Ⅱ.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18**

**Ⅲ. 예술공간특성화지원[일반공모] ····· 22**

**Ⅳ.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지원 ····· 25**


## 3. 국제예술교류 활성화


**Ⅰ. 국제예술교류지원[일반공모] ····· 28**

# 1.공통사항 안내

Ⅰ. 2020년도 주요 달라진 점
Ⅱ.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Ⅲ. 공모사업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Ⅳ. 지원신청자격·부적격자·부적격사업·지원신청·예산편성 안내
Ⅴ. 지원시스템 사용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 따라

*우리 재단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재단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Ⅰ 2020년도 주요 달라진 점

## 1. 예술지원체계 재편

### (1) 사업유형 관련

| 2019년<br>14개 사업유형 | 2020년<br>3개 부문 – 10개 사업유형 |
|---|---|
| **(예술창작팀)**<br>① 전문예술창작지원<br>(A형: 연례정기/ B형: 창작기획)<br>② 최초예술지원<br>③ 장애인 예술가(단체) 활동지원<br>④ 예술 활력 프로젝트 지원<br>⑤ 국제예술교류지원<br>⑥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br>⑦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br>⑧ 대안 문화공간 지원<br>⑨ 제주 원로예술인 지원<br>⑩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br>⑪ 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공간 지원<br>⑫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br><br>**(생활청년문화팀)**<br>⑬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지원<br>⑭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지원 | **Ⅰ. 기초예술창작 활성화**<br>① 예술창작활동지원<br>②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br>③ 예술공간지원<br>④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지원<br>⑤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지원<br>⑥ 청년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br><br>**Ⅱ. 국제예술교류 활성화**<br>① 작가교환 프로그램 지원 (지정공모)<br>② 국제 예술교류지원 (일반공모)<br><br>**Ⅲ. 지역문화 활성화**<br>①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br>②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2020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 관리 체계 재편

### ※ 2019년 – 2020년 문화예술지원사업 비교

| 2019년<br>14개 사업유형 | 2020년<br>3개 부문 – 10개 사업 유형 |
|---|---|
| 전문예술창작지원<br>(A형: 연례정기/B형: 창작기획) | **Ⅰ. 기초 예술창작활성화** |
| 최초예술지원 | ① 예술창작활동지원(신진예술가/<br>일반예술/우수기획/원로예술인 지원) |
| 제주원로예술인지원 | ②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 예술활력 프로젝트지원 | ③ 예술공간지원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④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지원 |
|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 ⑤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지원 |
| 대안문화공간지원 | ⑥ 청년문화매개 특성화 사업 |
| 장애인 예술가(단체) 활동지원 | **Ⅱ. 국제예술교류** |
|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 | ① 작가교환프로그램지원(지정공모) |
| 국제예술교류지원 | ②국제예술교류지원(일반공모) |
| 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공간지원 | **Ⅲ. 지역문화 가치 확산** |
|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지원 | ①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지원 |
|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지원 | ②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지원 | |

## (2) 지원 기준 및 지원대상 관련

<table>
<tr><th></th><th>2019년</th><th>2020년</th></tr>
<tr><td>지원<br>체계</td><td><u>생애주기별</u> 지원체계<br>(생물학적 나이 기준)<br>• 신진 : 만 24세 ~ 만 34세<br>• 유망 : 만 35세 ~ 만 49세<br>• 중견 : 만 50세 ~ 만 69세<br>• 원로 : 만 70세 이상</td><td><u>경력단계별</u> 지원체계<br>(첫 활동으로부터의 활동년수 기준)</td></tr>
<tr><td>지원<br>자격</td><td>문화예술 <u>활동 횟수</u> 기준<br>개인 최근 3년간 개인발표회 1회 또는 단체발표회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거주) 예술인<br>단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전문예술단체</td><td>문화예술 <u>활동 경력</u> 기준<br>개인 ·신진 : 첫 활동 이후 예술활동경력 <u>10년 이하</u><br>·중견 : 첫 활동 이후 예술활동경력 <u>10년 이상</u><br>·원로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u>30년 이상</u><br>단체 최근 3년간 <u>지원 해당 분야</u>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td></tr>
</table>

**※ 첫 활동의 기준 안내**

- '첫 활동'이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첫 활동을 의미하며 학내 활동 및 졸업작품(졸업공연, 졸업전시, 학위청구전 등)은 첫 활동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아직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첫 활동이 없는 신진예술가의 경우에는 학내활동, 워크숍, 교육활동 등을 해당 분야 관련 활동 경력으로 인정함
- 본인의 활동 영역(실연자/기획자/창작자/매개자/작가/기획자 등)과 지원신청서 상 역할이 다른 경우, 지원신청서 상 역할로 첫 활동 산정
  (예) '배우'로서 활동하고, '배우'로 지원신청한 경우, '배우'로서의 경력으로 첫 활동 산정
  (예) '작가'로서 활동하다가 '기획자'로 역할을 전환한 경우, '기획자'로서의 경력으로 첫 활동 산정
- 다원의 경우 본인이 예술 활동을 처음 시작한 분야를 기준으로 첫 활동 산정
- 시각의 경우 기획자는 공동·협력 전시 기획 경력 인정 (단순 운영 스탭 제외)
- 예술단체의 경우, 단체명으로 진행한 첫 활동을 기준으로 함

## 2. 다년사업 신설

○ 다년간 지원(최대2개년)을 통한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 마련
※ 해당사업 : Ⅰ.기초예술창작활동-①예술창작활동지원-c.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사업
※ "2019년 예술활력프로젝트-창작발표형"은 다년사업으로 아래 사업으로 지원가능
(Ⅰ.기초예술창작활동-①예술창작활동지원-c.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사업/개인: 최대 1천만원, 단체: 최대 5천만원)

## 3. 집행기준 범위 확대

○ 법인 단체 대표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비 지급 가능 (총 사업비의 20%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2019.9.20.)』,『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 규정 (2019.12.20.개정 예정)』에 의거 법인 단체 대표자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비 지급 가능
(급여성 인건비는 지급 불가)

※ 단,『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 경비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본인의 창작 사례비 지급가능

※ 법인단체 판단기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법인성격코드인 경우 (예: ×××-82-×××××)**

## 4. 지원사업 '교부~집행~정산' 시스템 변화

○ '지원신청-접수-교부-집행-정산-결과보고' 등 지원사업 일련의 과정 전체에 대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전면 사용
※ 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교부, 집행, 정산 (e나라도움)' 사용 (2019년과 동일)

## 5.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예술성 중심의 심의기준 강화를 위해 예술가의 예술적 비전 제시 및 블라인드(문학, 시각예술) 심의 확대
(기존) 가중치 30 % → (확대) 가중치 40 % 이상으로 구성
○ 심의위원 5명 이상 구성 시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여 평균 점수 산술 후 심의 반영

# II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1.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 지원사업명 | | | | 지원신청분야 | | | | 지원자격 | | 지원기간 | 공모일정 | 소관부서 |
|---|---|---|---|---|---|---|---|---|---|---|---|---|
| | | | | 문학 | 시각 | 공연 | 다원 | 개인 | 단체 | | | |
| Ⅰ. 기초예술창작활성화 | ① 예술창작활동지원 | a.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 | ● | ● | ● | ● | ● | | 단년 | 1차 공모 | 예술창작팀 |
| | | b.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 | ● | ● | ● | ● | ● | ● | 단년 | | |
| | | c.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 | ● | ● | ● | ● | ● | ● | 단년 | | |
| | | | | ● | ● | ● | ● | ● | ● | 다년 | | |
| | | d.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 | ● | ● | ● | ● | ● | | 단년 | 2차 공모 | |
| | ②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 | | | ● | | | ● | 단년 | 2차 공모 | 예술창작팀 |
| | ③ 예술공간특성화지원 | a. 재단운영공간 | 기획공모 | 산지천갤러리 | 미정 | | | 미정 | | 단년 | 별도 공모 | (가)예술공간통합운영팀 |
| | | | | 예술공간이아 | | | | | | 단년 | | |
| | | | 레지던스 | 예술공간이아 | | | | | | 단년 | | |
| | | | | 예술곶산양 | | | | | | 단년 | | |
| | | | 초청공모 | 예술공간이아 | | | | | | 단년 | | |
| | | b. 일반공모 | 예술공간특성화지원 | ● | ● | ● | ● | ● | ● | 단년 | 2차 공모 | 예술창작팀 |
| | ④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 | | ● | ● | ● | ● | ● | ● | 단년 | 1차 공모 | |
| | ⑤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지원 | | | ● | ● | ● | ● | ● | ● | 단년 | 2차 공모 | |
| | ⑥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 a. 청년예술 처음발표지원 | | ● | ● | ● | ● | ● | | 단년 | 별도 공모 | 생활청년문화팀 |
| | | b.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 | | ● | ● | ● | ● | ● | | | | |
| | | c.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d.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지원 | | ● | ● | ● | ● | ● | ● | | | |
| Ⅱ. 국제예술교류활성화 | ① 지정공모 : 작가교환 프로그램 (호주 - 아츠 태즈메이니아) | | | | ● | | | ● | | 단년 | 별도 공모 | (가)예술공간통합운영팀 |
| | ② 일반공모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 | | ● | ● | ● | ● | ● | ● | 단년 | 2차 공모 | 예술창작팀 |
| Ⅲ. 지역문화활성화 | ① 해녀문화우수예술창작지원 | | | ● | ● | ● | ● | ● | ● | 단년 | 별도 공모 | 지역문화팀 |
| | ②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 | | ● | ● | ● | ● | | ● | 단년 | 별도 공모 | 생활청년문화팀 |

※ 사업별 세부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
※ 제주문화예술교육사업은 별도 공지

## 2. 2020년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2차공모 개요

| 구분 | | 제주원로예술인회고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 예술공간특성화 |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 국제예술교류 |
|---|---|---|---|---|---|---|
| 지원목적 | | 도내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창작 의욕 및 자긍심 고취<br>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과 원로 예술인의 위상 제고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공연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br>공연예술단체의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작 거점 확충 및 자생력 있는 공간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br>다양한 작품 창작 활성화 지원을 통한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 제주 예술계의 비평 담론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작품창작 발표 활동의 장기적 기반 조성<br>제주문화예술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한 제주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가치 제고 |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예술교류활동(공동협업작업, 리서치, 초청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br>예술가(단체)의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및 기회 제공 |
| 신청자격 | 개인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가 (공고일 기준) | - | - | 최근 5년 이내에 제주 지역 문화예술 연구평론 전문 간행물을 1회 이상 발간한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br>※ 개인 신청인 경우 2인 공동연구집필 신청 가능(단 대표 1인의 명의로 신청하되 신청서류에 반드시 공동연구와 집필자 정보 명기) | 최근 3년간 (2017~2019년) 지원 해당분야 기획 경력이 2회 이상 제주 소재(거주) 예술인 |
| | 단체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가 (공고일 기준) 소속의 예술단체 | 연극,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 단체<br>설립연한 3년 이상 (2017년 이전 설립)의 공연경력이 있는 공연 예술단체<br>제주도에 소재하거나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자하는 공연예술 단체<br>※전문예술법인(단체) 우대 | 도내 예술공간을 운영하는 단체<br>※ 유형별 신청자격은 22페이지 참조 | | 최근 3년간 (2017~2019년) 지원 해당분야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
| 지원규모 | 개인 | 1,000만원 ~ 3,000만원 | - | 300만원 ~ 5,000만원<br>※ 유형별 지원금액 상이 | 최대 2,000만원 | 최대 2,000만원 |
| | 단체 | | 8,000만원 ~ 1억 5,000만원 | | | |
| 심의방법 | | 1. 행정심의<br>2. 서류심의<br>3. 토론심의 | 1. 행정심의<br>2. 서류심의<br>3. 인터뷰 심의(공개)<br>4. 토론심의 | 1. 행정심의<br>2. 서류심의<br>3. 인터뷰 심의(공개)<br>4. 토론심의 | 1. 행정심의<br>2. 서류심의<br>3. 토론심의 | 1. 행정심의<br>2. 서류심의<br>3. 인터뷰 심의(공개)<br>4. 토론심의 |

# Ⅲ 공모사업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1. 공모 및 사업기간

(1) 2차 공모

○ 공고기간 : 2020. 1. 31.(금) ~ 2. 17.(월)

○ 접수기간 : 2020. 2. 3.(월) 09:00 ~ 2. 17.(월) 17:59

○ 사업기간 : 2020. 3. 1.(일) ~ 12. 10.(목)

## 2.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포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동의서 필수 제출

(2)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3) 활동 경력증빙 상의 개인·단체가 지원신청 개인·단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 불인정

(4) 1개 단체(개인)는, 1개 사업만 선정·지원신청 가능하며 단,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가능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는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1차 공모 심의 진행 중인 경우, 2차 공모 사업 중 1개 사업만 선정·지원신청 가능하며 단, 2개 사업 모두 지원이 결정된 경우 1개 사업을 포기 하여야 함

(5)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제주문화예술지원 여러 사업 유형에 복수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복수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결정 후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6) 공모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지원신청사업은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사후 지원이 가능함

# Ⅳ 지원신청자격 · 부적격자 · 부적격사업 · 지원신청 예산편성 안내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에 해당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하고 '0'점 처리하며,
지원 결정 후 발견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1. 지원신청 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 |
|---|---|
| **개인**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br>※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 휴학생 신청 불가(대학원생 가능)<br>※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 유예자는 지원 가능 (증빙자료 필수 제출)<br>※ 선정된 개인은 최종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격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br>[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br>※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
|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를 증빙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제출 |

## 2. 지원신청 부적격자

### (1) 지원신청 개인(단체) 부적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신청 주체인 공공 공연장은 예외
○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 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 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신청 접수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단체 또는 전년도 정산보고서 제출기한(60일)을 초과한 개인·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
※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3)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2019.12.20.개정)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단체

## 3.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1)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졸업작품 및 학위청구 관련 발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참가비(출품료)를 받는 사업
○ 지원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 사업 수행 인원 중 50%이상이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 (2)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원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 4. 지원신청 예산편성 안내

(1)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함
※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2) 교부 신청 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단,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지원신청 사업 및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선정된 신청인·단체가 사업수행 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규모 및 내용을 대폭 변경할 수 없음**
※ 공연·행사횟수·전시일수, 지휘자·연출가·극작가·안무가 등 주요 출연진·제작진, 사업장소 등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취소, 삭감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4) 교부 신청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례비(출연료, 원고료, 창작활동비 등) 예산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5) 지원 신청시 자부담을 편성하여 선정되면 확정된 지원금에 비례하여 자부담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신청시 | | | | 지원금 확정시 | | |
|---|---|---|---|---|---|---|
| 신청예산 (C=A+B) | 신청지원금 (A) | 신청자부담 (B) | ▶ | 확정예산 (F=D+E) | 확정지원금 (D) | 확정자부담 (E) |
| 1,1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 770만원 | 700만원 | 70만원 |

(6) 사업비에 편성된 자부담은 반드시 교부 신청 전 선입금 후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시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교부신청시 | | | | 집행완료시 | | |
|---|---|---|---|---|---|---|
| 확정예산 (F=D+E) | 확정지원금 (D) | 확정자부담 (E) | ▶ | 실집행예산 (F=D+E) | 집행지원금 (D) | 집행자부담 (E) |
| 770만원 | 700만원 | 70만원 | | 763만원 | 700만원 | 63만원 |

⇨ 자부담 7만원(자부담 10%) 미집행, 지원금 70만원(지원금 10%) 반환

(7) 지원사업의 지원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1,000만원 이상 의무)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20.6월 이후 수수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수수료 |
|---|---|
| 1천 5백만원 미만 | 217,000원 |
|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290,000원 |
|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 346,000원 |
|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375,000원 |
|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 520,000원 |
|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 563,000원 |
|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607,000원 |
|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 650,000원 |
| 9천만원 ~ 1억원 미만 | 694,000원 |
| 1억원 ~ 2억원 미만 | 873,000원 |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지원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 5. 심의배제사항

(1)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2) 신청제한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
(4) 지원신청서의 주최,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원신청자(단체)가 주체가 아닌 경우(대규모 행사의 부속 사업 등)

**심의배제사항에 해당되거나 감점이 적용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V 지원시스템 사용안내

## 1. 지원신청방법

###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외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접수시 심의배제)
- 단체 지원신청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개인·단체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경력사항 등 )

○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원신청부터 선정, 교부, 정산의 전체 과정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수행합니다.
※ 예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교부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조금 주관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선택 ▶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 공모사업 확인 후 신청할 '신청분야(장르)' 선택 ▶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최종 첨부파일 확인] ※분야별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및 필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첨부 ▶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 지원신청 완료

## 2. 시스템 사용시 유의사항

(1) 지원 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시스템에 신청 시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는 심의 배제처리 됩니다.
※ 단, 제출된 첨부파일 내 이미지 등이 손상된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요청 할 수 있음

(3) 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 기초예술 창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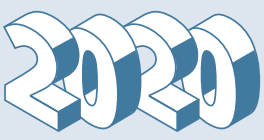
제주를 기반으로 한 기초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

Ⅰ.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사업

Ⅱ.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Ⅲ. 예술공간특성화지원[일반공모]

Ⅳ.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지원



# Ⅰ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사업

○ 도내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창작 의욕 및 자긍심 고취
○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과 원로예술인의 위상 제고

| | |
|---|---|
| **세부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
| **신청자격** | **구분** / **지원자격**<br>개인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가 (공고일 기준)<br>단체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가 (공고일 기준) 소속의 예술단체<br>※ 개인·단체 모두 반드시 사업전담 인력(기획자) 1인 이상을 필수로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 편성 가능<br>※ 기획자 이력사항 및 원로 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조서 필수 제출 |
| **지원내용 및 대상** | • 2020. 12. 10. 까지 완료가 가능한 아래의 사업<br>**- 작품집 및 작품모음집 발간**<br>(예) 창작곡 악보집, 안무집, 영상집, 희곡집, 작품도록집, 시집, 수필집 등<br>- 발간을 전제로 한 전시·공연 및 학술행사 등 기획프로그램 |
| **지원규모** | •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
| **지원항목** | • 작품집 및 작품모음집 발간에 필요한 인쇄 출판비<br>• 전시·공연 및 학술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br>• 자료수집·조사·기획 등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기획자)<br>※『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창작 사례비 편성 가능(총 사업비의 20% 이내)<br>※ 지원신청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필수<br>※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br>※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경상 경비는 지원 불가 |
| **제출자료** | **구분** / **세부내용**<br>필수 /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재단 홈페이지)<br>- 2020년 사업계획 및 해당 예술인의 활동조서 등 기재<br>② 해당 예술인의 30년 이상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방문 또는 우편제출)<br>- 우편 제출 : 우편물은 마감일 기준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br>※ 제출처 : 제주시 동광로 51, 제주문화예술재단 8층 예술창작팀<br>선택 /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br>(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음원, 영상 등)<br>※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br>※ 영상 파일형식 : avi, wmv<br>음원 파일형식 : mp3, wav |

**유의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으로 유의
-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 3차 토론심의 |
|---|---|---|
| 필수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제출된 지원신청서 검토 | 전문가 집체토론 |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 5인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함) | 2차 심의결과에 따른 세부 지원금 확정 |

**심의기준**

| 구분 | 심의기준 | 가중치 | 주요 심의내용 |
|---|---|---|---|
| 계획 | 사업의 구체성/ 적정성 | 20 |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br>•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br>•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br>• 사업예산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책정되었는가 |
| | 예술활동경력 및 지역 예술계 기여도 | 40 | • 원로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실적과 예술적 성취가 어떠한가<br>• 지역 예술사의 예술적, 학문적 기여도가 있는가<br>• 예술인으로서 본인의 작업에 대한 고민(탐구의식, 문제의식 등)과 예술적 비전(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실행 | 사업 수행역량 | 10 | • 사업에 참여하기로한 인력(기획자, 출연진, 제작진 등)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하며 사업 기간에 추진해낼 역량이 있는가<br>•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br>•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은가<br>• 관객 개발 및 홍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
| 성과 | 기대되는 성과 | 20 | • 사업결과가 해당분야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성 확보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br>• 사업결과가 지역 예술계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 II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2019년 | 2020년 |
|---|---|---|
| 선정주제 | '공연장-공연단체' 협약 후 공연단체 주체로 신청 | 공연장(도 문화정책과) 및 공연단체(재단) 각각 개별 신청 |
| 매칭방식 | '공연장' 자체 공모 등을 통한 공연단체 사전 매칭·협약 방식 ▶ | 개별 신청 후 재단 주관 전문가 심의를 통한 사후 매칭 협약 방식 |
| 선정방식 | 사전 매칭 협약된 '공연장-공연단체' 간 심의 | 공연장 신청(도 문화정책과) → 공연장 현장실사 → 공연단체 신청 (매칭 희망 1개 공연장 제출) → 심의(공연단체) → 심의를 통한 매칭 |

**신청자격**

- 연극, 무용, 음악,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설립연한 3년 이상(2017년 이전 설립)의 공연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 제주도에 소재하거나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 우대

**세부분야**

- 연극 : 연극분야(아동극, 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 음악 :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 전통예술 :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공연 전문단체

**지원내용 및 대상**

- 2020. 12. 10. 까지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예술창작활동 및 공공 프로그램 지원
  -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을 구분 수행하여야 함
  - 수행 프로그램 공연일정은 공연장과 협의하여 주중(평일)일정으로 우선 배정
  - **사업 수행에 따른 '사전~중간~결과(성과) 과정에서 인터뷰, 컨설팅,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가능한 사업**

| 구분 | | 내용 | 작품수 | 공연횟수 |
|---|---|---|---|---|
| 필수 | 신작공연 | •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 1작품 | 2회이상 |
| | 레퍼토리 | •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 1작품 | |
| | 퍼블릭 프로그램 | • 교육 :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br>• 문화나눔 :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br>• 기타 :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 공연장과 협의 | |
| | (도내) 상주단체 간 교류 협력 | •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 내 교류·협력 추진 | 1개 작품 1회 이상 | |
| | | ※ 선정 후 공연장, 공연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공연장, 일정, 규모 등) 결정 (단, 지원신청 시 예산계획에는 해당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 |
| 선택 | (도외) 상주단체 간 교류 협력 | • 상주단체 페스티벌 및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해 타 지역 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률 제고 | - | |
| | 조직 역량 강화 | •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br>•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 단순 단원 공연 연습 및 단원 간 회의는 불인정 | |

**지원규모**

- 최소 8,000만원 ~ 최대 1억 5천만원

**유의사항**

- 제주 소재 공공 공연장 중 참여 공연장 현황

※ 1개 공연장 1개 공연단체 매칭 원칙(단, 공연단체 콘텐츠 내용에 따라 공연장 변경이 불가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공연장명 | 객석규모 | 소재지 | 이용가능시설 | 비고 |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405석 | 제주시 연동 | 공연장 | 선정 후 세부사항 별도 협의 |
| 김정문화회관 | 377석 | 서귀포시 강정동 | 사무실, 전시실, 연습실, 공연장 | |
|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 160석 | 제주시 조천읍 | 사무실, 연습실, 공연장 | |

**심의절차**

| 항목 | | 집행용도 | 집행가능 항목 | 편성비율 | 편성여부 |
|---|---|---|---|---|---|
| 사업비 | 공연단체 사업비 | 수행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 - 공연 제작 경비<br>- 퍼블릭 프로그램, 상주단체간 교류 • 협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br>- 프로그램 홍보마케팅비<br>- 기타 관련 필수 경비 | 50~100% | 필수 |
| 운영비 | 공연단체 운영경비 | 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성/ 비인건비성 경비 | -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기획 및 행정인력 인건비 | 0~30% | 선택 |
| | 공연장 필요경비 | | - 프로그램 운영, 작품제작, 홍보 • 마케팅, 상주공간 관리, 관객 안내 등의 일용임금 | 0~20% | 선택 |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창작사례비 편성 가능(총 사업비의 20% 이내)

※ 지원 신청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필수

※ 공연단체의 사업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매칭 후 사업 기대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및 선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협약 체결 안내**

- 심의 후 매칭이 완료된 후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직접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구분 | 세부 수행 내용 |
|---|---|
| 공연단체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작품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br>•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br>•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br>•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br>•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마케팅 등)<br>•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br>• 보조금 정산 총괄 |
| 공연장 |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제공시설 내역 명기)<br>•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br>•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br>•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br>•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br>• 보조금 정산(세부내역 정산 협조) |

**제출자료**

| 구분 | 세부 내용 |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hwp<br>- 2020년 사업운영계획 등 작성<br>- 최근 3년간(2017~2019년)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br>- 단체의 성격, 설립연도를 알 수 있는 법적 증빙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br>②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형식:자유양식) ppt |
| 선택 |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br>(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및 리플릿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지원기관 사업수행 확인서 등)<br>※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br>※ 설립연도 증빙자료는 해당 공연단체와 동일한 공연단체임이 증명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사업추진 및 심의절차**

| 공연장 신청 | 공연장풀 공지 | 현장실사 |
|---|---|---|
| 도 문화정책과로 개별 신청 ▶ | 2차 공모시 안내 ▶ | 공연단체의 공연장 현장실사 기간 운영<br>※ 2.4.(화)~2.5.(수) |
| **공연장+공연단체매칭심의** | **공연장 · 공연단체 심의** | **공연단체 신청** |
| 선정된 공연단체 대상 공연장의 매칭 공연단체 제출에 따른 심의 진행 ▶ | 공연단체 서류 · 인터뷰 (공개) 심의<br>※ 필요시 공연장 현장실사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으로 개별 신청<br>※ 신청시 매칭 희망 공연장 제출 |
| **공연장+공연단체+재단협의** | **결과 공지** | **공연장+공연단체 협약** |
| 공연장+공연단체 매칭 심의 결과, 협의 내용 공유 ▶ | 최종 심의 결과 발표 ▶ |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협약 체결 |

**심의기준**

• 공연단체

| 심의기준 | 가중치 | 주요 심의내용 |
|---|---|---|
| 수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 25 | • 수행 프로그램의 우수성<br>– 수행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br>–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br>–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 수행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 25 | • 수행 프로그램 계획의 실현가능성<br>– 사업운영계획, 기획인력, 홍보마케팅, 관객개발 계획 등의 타당성<br>– 수행 프로그램 내용(횟수, 규모, 인원 등) 및 추진단계의 구체성 |
| 창작역량 및 활동 실적 | 25 | • 공연단체의 최근 활동 실적 및 성과<br>– 최근 3년간 창작활동 실적 및 성과(신작발표, 레퍼토리 구축, 관객개발, 예술제 참가, 수상실적 등)<br>– 단체에 대한 외부평가(언론 및 예술전문지 공연평 등) |
| 사업운영 역량 | 25 | • 공연단체의 사업운영 역량<br>–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여부<br>– 공연단체 보유인력(예술가, 행정가 등) 구성 현황과 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br>• 예산 계획의 타당성<br>– 예산 계획에 대한 합리성<br>–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의 적절성 |

# Ⅲ 예술공간특성화지원

○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작거점 확충 및 자생력 있는 공간으로 성장 기반 마련
○ 다양한 작품 창작 활성화 지원을 통한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신청자격**

| 구분 | 지원방침 | 지원자격 |
|---|---|---|
|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 공연예술공간 창작 발표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 - 도내 소재 기초 공연예술 발표 공간(소극장)<br>※ 단순 연습실, 대관 전용시설은 지원대상 제외 |
|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 예술을 기반으로 도민과의 접점을 확산할 수 있는 공간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 최근 3년간(2017~2019년) 1회 이상 해당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예술을 매개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예술공간<br>(공고일 현재 신청 주체의 해당 공간 운영 필수)<br>※ 상업적 카페, 갤러리 지원 불가 |
|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 국내외 예술가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 하는 프로그램 지원<br>· 지역주민 연계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도민 문화 향유권 신장 | - 기초예술중심으로 운영되는 도내 소재 창작공간<br>※ 해당분야 활동실적(예시)<br>- 지역 커뮤니티, 예술가, 기획자 등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 및 협업에 의한 창작 활동<br>-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br>- 입주작가 창작활동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

**지원 내용 및 대상**

• 2020. 12. 10. 까지 완료가 가능한 아래의 사업으로 반드시 전담인력(기획자 등) 1인 포함
**- 사업 수행에 따른 '사전~중간~결과(성과)' 과정에서 전문가 인터뷰, 컨설팅,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가능한 사업**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 공연예술공간에서의 2개 이상의 기획 공연 (창작발표 1개 이상, 초청가능) | 최대 3,000만원 |
|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 작은예술공간 내 소규모 행사, 발표 (문학행사, 전시, 공연) | 300 ~ 700만원 |
|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 창작공간 프로그램 내 연간 우수 기획 프로그램 | 최대 5,000만원 |

**지원항목**

• 예술공간 특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직접경비

| 구분 | | 지원항목 |
|---|---|---|
| 공통 | | - 사업전담인력(기획자 등)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
| 공간별 특이사항 |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 공간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
| |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 입주 예술가의 작품 제작 및 발표 비용<br>-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주 예술가의 개인 창작 활동에 필요한 아티스트피 (월 60만원 이내)<br>**※ 활동실적보고서 제출 필수(교부시 별도 공지)**<br>- 국내외교류,지역주민연계커뮤니티활동등창작공간프로그램운영비용<br>- 공간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
| 편성불가항목 | | - 공간의 구입, 임대, 산출 및 개보수 경비<br>- 고정자산 취득 및 경직성 경비<br>- 간담회비, 식비, 다과비 등 업무추진비<br>-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 |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창작사례비 편성 가능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지원 신청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필수

**제출자료**

| 구분 | 세부내용 |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br>- 2020년 사업계획 및 기획자 이력사항 등 기재<br>- 주요사업 및 부대행사 기획서<br>②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형식 : 자유양식) **※ 작은예술공간 제외**<br>③ (단체인 경우)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br>-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
| 선택 |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br>(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br>※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공통 유의사항**

-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필수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인터뷰 심의 | 4차 토론심의 |
|---|---|---|---|
| 필수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제출된 지원신청서 검토 | PT 발표를 통한 공개 인터뷰 심의 | 전문가 집체토론 |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 |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술함) ▶ | 사업내용 PT발표 및 심의 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제외** ▶ | 3차심의결과에따른 세부 지원금 확정 |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 필요 시 지원신청 공간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개별 연락 후 심의위원회 방문 예정**

**심의기준**

| 구분 | 심의기준 | 가중치 | 주요 심의내용 |
|---|---|---|---|
| 계획 | 사업의 구체성/적정성 | 20 |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br>•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br>• 사업예산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책정되었는가<br>•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 장소 등은 적정한가<br>• 예술인으로서 본인의 작업에 대한 고민(탐구의식, 문제의식 등)과예술적비전(장기적으로지향하는목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실행 | 사업의 예술성 | 40 | • 사업 내용의 전문성 및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 예술성, 독창성, 차별성, 참신성, 우수성 등 |
| | 사업 수행역량 | 30 | •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인력(연구진, 집필진 등)은 역할에 따른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에 추진해낼 역량이 있는가<br>•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br>•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은가<br>• 관객 개발 및 홍보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
| 성과 | 기대되는 성과 | 10 | • 사업 내용은 해당 분야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성 확보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br>• 이번 작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예술가(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 Ⅳ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지원

○ 제주 예술계의 비평·담론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작품창작·발표 활동의 장기적 기반 조성
○ 제주문화예술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제주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가치 제고

| | |
|---|---|
| **세부분야** | • 평론, 비평, 학술 |
| **신청자격** | • 최근 5년 이내에 제주 지역 문화예술 연구·평론 전문 간행물을 1회 이상 발간한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br>※ 개인 신청인 경우 2인 공동연구·집필 신청 가능<br>(단 대표 1인의 명의로 신청하되 신청서류에 반드시 공동연구와 집필자 정보 명기) |
| **지원내용 및 대상** | • 2020. 12. 10. 까지 완료가 가능한 아래의 사업<br>- 예술비평 발간 및 활동지원 :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등의 간행물 발간 및 행사(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지원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평활동 포함 예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운영<br>- 문화예술연구집 발간 및 활동지원 : 제주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구집 발간 및 행사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지원 |
|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br>- 학위논문집, 에세이, 교습서, 번역본 등 연구작업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작품집, 다수 연구자 저술 모음집<br>- 비평전문지가 아닌 일반적인 미술잡지 발간<br>-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협회지) 및 연례 학술 행사<br>- 전작도록, 전시도록 등 화집 발간<br>-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공연홍보활동, 단순 감상문, 타인의 비평문을 단순 게재하는 활동 |
| **지원규모** | • 최대 2,000만원 |
| **지원항목** | • 비평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br>- 연구비 (총 사업비의 50% 이내) 및 인쇄출판비 지원<br>-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br>-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 불가<br>※『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창작사례비 편성 가능 (총 사업비의 20% 이내)<br>※ 지원 신청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필수 |
| **제출자료** | 아래 표 참조 |

| 구분 | 세부내용 |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br>- 2020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역 등 기재<br>② 최근 5년간(2015~2019년) 신청인(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br>- (발간사업인 경우) 1건당 겉표지 1면, 목차, 발행일 표시페이지 1면<br>※ 총 3면 스캔 후 제출서식에 맞춰 이미지 넣기<br>- (행사 및 학술행사인 경우) 1건당 행사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지원신청자명, 목차 1면<br>※ 해당 이미지 자료를 제출서식에 맞춰 이미지 넣기<br>③ (발간사업인 경우) 발간예정 원고 1편 20페이지 이내 제출 (12pt, 휴먼명조체)<br>④ (단체인 경우)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br>-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
| 선택 |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br>(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br>※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 3차 토론심의 |
|---|---|---|
| 필수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제출된 지원신청서 검토 | 전문가 집체토론 |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 5인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함) | 2차 심의결과에 따른 세부 지원금 확정 |

**심의기준**

| 구분 | 심의기준 | 가중치 | 주요 심의내용 |
|---|---|---|---|
| 계획 | 사업의 구체성/적정성 | 20 |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br>•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br>사업예산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책정되었는가<br>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 장소 등은 적정한가<br>예술인으로서 본인의 작업에 대한 고민(탐구의식, 문제의식 등)과 예술적 비전(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실행 | 사업의 예술성 | 40 | • 사업 내용의 전문성 및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br>- 예술성, 독창성, 차별성, 참신성, 우수성 등 |
| 실행 | 사업 수행역량 | 30 | •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인력(연구진, 집필진 등)은 역할에 따른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에 추진해낼 역량이 있는가<br>•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br>•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은가<br>• 관객 개발 및 홍보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
| 성과 | 기대되는 성과 | 10 | • 사업 내용은 해당 분야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성 확보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br>• 이번 작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예술가(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 3. 국제예술교류 활성화

제주 예술가(단체)의 국제교류지원 다각화를 통한
해외 진출 기회 제공

ㅣ. 국제예술교류지원 [일반공모]

2020

# Ⅰ 국제예술교류지원

○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예술교류활동(공동협업작업, 리서치, 초청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

○ 예술가(단체)의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및 기회 제공

**신청자격**

| 구분 | 지원자격 |
|---|---|
| 개인 | 최근 3년간(2017~2019년) 지원 해당분야 기획 경력이 2회 이상 제주 소재(거주) 예술인 |
| 단체 | 최근 3년간(2017~2019년) 지원 해당분야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제주 소재 예술단체 |

**지원내용 및 대상**

- 2020. 12. 10. 까지 완료가 가능한 아래의 사업
  - 공신력 있는 국외 기관, 단체와 공동제작 및 발표
  - 국외에서 개최하는 예술사업 참가 (공연, 전시, 세미나, 비엔날레, 워크숍, 축제 등)
  - 국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 **사업 수행에 따른 '사전~중간~결과(성과)' 과정에서 전문가 인터뷰, 컨설팅,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가능한 사업**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친목 성격의 초청성 교류 행사**
  - **단순 초청으로 구성된 형식적 교류활동**
  - **해외 교민 대상 위문 공연 형태의 사업 등**

**지원규모**

- 최대 2,000만원

**지원항목**

- 국제예술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 항공비(운송비), 숙박비, 행사홍보비, 사례비, 장소대관료, 임차료, 통·번역비, 현지교통비, 참가비용등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창작사례비 편성 가능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지원 신청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필수

**제출자료**

| 구분 | 세부내용 |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br>- 2020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역 등 기재<br>② 최근 3년간(2017~2019년) 신청인(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br>③ 사업 추진 확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br>- 초청장, 협약서, 공동사업추진계약서, 계약서 등<br>④ 초청(교류) 단체 연혁 및 최근 3년간(2017~2019년)의 활동 내역<br>⑤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형식:자유양식)<br>⑥ (단체인 경우)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 |
| 선택 | ① 초청(교류)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내용이 명기된 초청(교류) 기관이 작성한 사업 기술서(상호호혜적 관계 명시) 또는 (공모의 경우)사업 공고<br>※ 기관 지원의 경우 초청(교류) 단체 및 기관으로 제출한 지원서 또는 제안서 제출<br>②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br>(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br>※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인터뷰 심의 | 4차 토론심의 |
|---|---|---|---|
| 필수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제출된 지원신청서 검토 | PT 발표를 통한 공개 인터뷰 심의 | 전문가 집체토론 |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 |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술함) ▶ | 사업내용 PT발표 및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 | 3차심의결과에따른 세부 지원금 확정 |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심의기준**

| 구분 | 심의기준 | 가중치 | 주요 심의내용 |
|---|---|---|---|
| 계획 | 사업의 구체성/ 적정성 | 20 |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br>•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br>• 사업예산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책정되었는가<br>•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 장소 등은 적정한가<br>• 예술인으로서 본인의 작업에 대한 고민(탐구의식, 문제의식 등)과예술적비전(장기적으로지향하는목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실행 | 사업의 예술성 | 40 | • 사업 내용의 전문성 및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br>- 예술성, 독창성, 차별성, 참신성, 우수성 등 |
| | 사업 수행역량 | 30 | •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인력(연구진, 집필진 등)은 역할에 따른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에 추진해낼 역량이 있는가<br>•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br>•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은가<br>• 관객 개발 및 홍보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
| 성과 | 기대되는 성과 | 10 | • 사업 내용은 해당 분야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성 확보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br>• 이번 작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예술가(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 Memo

## Memo

**제주문화예술재단**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Tel. (예술창작팀) 064-800-9131~7
(생활문화청년팀) 064-800-9162~7
(지역문화팀) 064-800-143~4
Fax. 064-800-9119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577-8751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02-6676-5100